

처분사전통지서

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직권말소									
2. 당사자	성명(명칭)	박○환(뽑방터)				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11, 1층(홍은동)								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등록된 영업소 주소를 확인한 결과, 기구·기기가 설치 되어있지 않고 실제 영업소 운영을 하지 않아 우리 구 게임산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됨.									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직권말소									
5.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	<p>▲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</p> <p>- 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·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</p> <p>▲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p> <p>- 제23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·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2. 영업소의 기구·기기 설치여부3.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·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.</p>									
6. 의견제출	제출처	기관명 주 소 처	서대문구청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전자우편	부서명 연희로 248 eg0920@sdm.go.kr	문화체육과 전화번호 모사전송	담당자 박은경 330-1649 330-1430				
	기한	2022. 10. 14.(금) 18:00까지								

붙임 의견제출서 1부.

서 대 문 구 청 장

